

「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

대구경영자총협회가 「2024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(구·군)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「2024년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」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일

대구경영자총협회장

I 사업목적

-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의 확대,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을 통하여 기업근로환경개선
- 근무환경개선, 안전사고예방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한 지역인재 유출방지

II 지원개요

■ 지원내용

- 규모 : 4개사 (대구 서구지역 4개)
 -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업 증감가능, 4개사 모집완료시 접수마감
- 금액 : 기업당 최대 950만원 한도 지원 (총 공사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금 필수)
 - ※ VAT 부가가치세 자부담,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가능
- 분야 :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
 - ※ 단순물품 구입불가

지원유형	지원내용	지원한도
후생시설 환경개선	- 체력단련실, 구내식당,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 등	최대 950만원 이내
작업장 안전환경개선	-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등	

■ 대상 :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
제조업종의 중소기업

※ 지원제외 대상 불임참조

※ 단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축소 조정할 수 있음

■ 시설공사기간 : 사업선정일로부터 2024.10.31.까지

■ 지원금 신청기간 : 공사종료 후 ~ 2024.11.30.까지

III 필수 지원조건

■ 1차 사업공고일(2024.03.28.)로부터 2024.10.31.까지 정규직 1명 이상 채용

※ 채용인원 예정인원 심사평가에 반영 예정

※ 신규 채용인력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함

※ 정규직 채용 필수이며 비정규직, 비상근축탁근로자, 일용근로자,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

IV 신청방법

■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4.06.14.(금) ~ 상시접수(선착순)

■ 신청서 :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dgef.or.kr>)
경총공지사항 참조

■ 접수방법

- 메일접수 : 신청서 및 기타서류 E-Mail 제출 (4605@dgef.or.kr)

- 우편 또는 방문접수 : 신청서 및 기타서류 작성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
(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28 대구경총회관 7층)

※ E-Mail, 우편, 방문 접수는 마감일 없이 접수하고 4개사 모집 완료시 접수마감이며,
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(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)

※ 선착순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■ 담당자 :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

(E-mail : 4605@dgef.or.kr / Tel : 053-560-7813)

V 평가방법

평가절차 : 서면평가, 현장점검, 최종선정심사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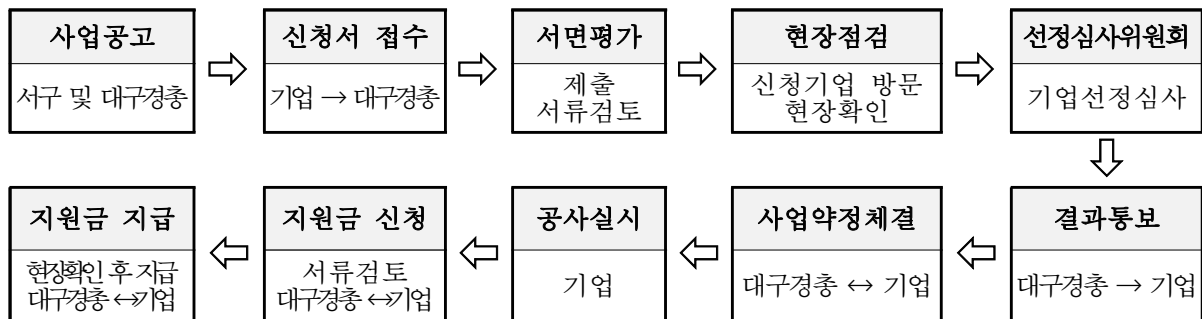
선정방법 ※ 접수상황 등의 상황에 따라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

- 1차(서면평가) : 기업의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
- 2차(현장점검) : 사업장 공사예정현장 방문을 통한 제출서류 내용 확인
 ※ 신청기업은 현장점검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, 불분명한 사유로 현장점검을 거부할 경우 탈락처리
- 3차(최종선정심사위원회) : 1,2차 서류 검토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심사평가

우대조건

- 최근 3년 이내에 대구 고용친화기업 등 대구시장이 인증한 우수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

VI 추진일정



VII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지원제외 대상 (접수마감일 기준)

-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(경비, 경호 등)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, 부동산업 등 제외
-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, 불법 증축 및 개축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
-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
- 건설공사현장 등 계절적, 한시적(일시적)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

- 신청기업과 공사시공업체가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
 - ※ 예 : 기업, 기업대표, 임원, 회사 가족 등이 공사업체 관계자인 경우
-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또는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
-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
-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
- 최근 2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
-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
- 사업협약 이후 회사 인수·합병·통폐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, 부실기업 등

유의사항

- 환경개선장소는 대구지역만 가능
 - ※ 본사는 대구시 소재, 공장(생산시설)은 타 지역인 경우, 본사만 가능
- 현 사업 진행 중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로 인하여 진행
-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개의 사업장만 지원
-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운영기관 (대구경영자총협회)에서 수시 및 불시 점검 가능

○ **공사업체 선정**

- 대구지역 내 소재(사업자등록증 기준), 해당공사 관련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
-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, 관련 법률에 의거 공사 면허를 소지한 기업 선정
- ※ **종합건설업, 전문건설업, 실내건축업, 소방공사업, 전기공사업 등**
- 민법상 사업주와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업체에 공사 위탁 시 지원 불가

○ **공사 관련 유의사항**

-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 가능한 기업
- 공사착공 전 수혜기업과 시공업체 간 공사계약서 제출
-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- 사업수행기관(대구경영자총협회)에서 공사 관련 보완사항을 기업에 통보할 경우 기업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

- 사업비,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관(대구경영자총협회)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
-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- 공사가 완료되면 선정기업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선(先) 지급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수행기관(대구경영자총협회)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(추진일정에 따라 지원금 신청 및 지급)
- ※ **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선정기업에게 개별 안내**
-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기업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고용현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가능
- 사업 지원조건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지원금 지급
- 선정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완료 시 지원금 반환
- 채용인원으로 타 사업 중복참여의 경우 선정불가

VIII 제출서류(붙임파일)

붙임 1. 제출서류 목록표 ※ 목록표 참고 후 제출서류(붙임2)와 함께 제출

붙임 2. 작성서식

- (기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확인서, 개인정보활용 및 사업참여·중복지원금지 협약서)